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직현천(직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역명	용역사업 주요내용	용역비(백만원)		용역 예정기간	평가 방법
		전체	1차 년도		
직현천(직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973	300	36개월	PQ (면접)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입찰 예정 시기는 '26. 9월 예정)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5개 이하 업체와 공동 참여(도내 소재 1개 이상) 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 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함
-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 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5) 참여기술인(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에서 동일 기간 공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습니다. (동일 기술인으로 2건 이상의 타 용역 PQ에 응모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처리 함)

나. 평가서 제출

- 1)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재
 - 2) 제출기간 : 2026. 9. 7.(월) 14:00 ~ 17:00
 - 3) 제출장소 :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 2층 251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4) 제출방법 : 방문제출
 - 5) 구비서류
 -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나)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I) : 1부(원본), 평가서 스캔PDF파일(USB)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자기소개서)(II) : 7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잔여 6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책 제출)
 - 마)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작성 파일(PDF형식), 자기평가서 파일(PDF형식)
- ※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 7. 1.)에 따릅니다.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해당용역공사규모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합니다.
- 3) 평가 결과 87.5(100점 환산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 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구비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및 평가서 파일(USB/업무중복도 평가자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마.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교체는 가능합니다.
-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차. 용역 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카. 기타 문의사항은 수자원관리과(☎054-880-4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